

## 2022년 하반기 여의도공원 일시적 장소 사용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하반기 여의도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5일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 < 2022년 하반기 일시적 장소 사용 운영 방향 >

- 하반기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주요 행사 적정성 검토
  - 행사계획, 규모,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한 심의 및 행사 일정 조정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1,000명 이상 대규모 행사 **불허**
- 지역주민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원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행사 제한
  - 여의도공원(장소 사용 공원시설 : 문화의 마당, 사모정 앞 광장) 1일 1행사 실시
  - 혼잡이 예상되는 2022 명절 기간 중 행사 제한
  - 공원산책로 (보행로, 자전거길)는 공원 이용객의 휴식을 위해 행사코스로 사용 제한
  - 시위 관련(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옥외집회·시위·신고, <경찰청 신고> 행사 포함 금지
- 공원 내 5,0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 제한
  - 행사장 내 순간 최대 입장인 수 5,000인으로 제한 (1㎡당 1명)
- 공원 내 행사 개최 시, 일회용품 사용 제한
-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확산 시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공원 내 행사 연기 및 취소 요청 가능

## 1. 여의도공원 일시적 장소 사용 운영

- 운영 기간 : 2022년 8월 1일 ~ 11월 30일
- 일시적 장소 사용 공원시설 현황

공원 시설 (광장·야외음악당)	면적(m <sup>2</sup> )	대 관 용 도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	관련 법령
문화의 마당	16,500	마라톤(경기·집회)	도시공원법 공유재산법 저작권법 공연법 부가가치세법
	24,750	박람회, 공연 등 (전시회, 공연·집회)	
	1,100	사생대회·백일장 등(집회)	
야 외 무 대	1,080	사생대회·백일장 등(집회)	
사 모 정 앞	1,044	사생대회·백일장 등 (집회)	

※ 행사장 내 순간 최대 입장인 수 5,000인으로 제한 (1㎡당 1명)

## 2. 장소 사용 신청 일괄 접수

- 기 간 : 2022년 7월 5일부터 7월 14일 18:00

※ 토,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평일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 및 전자우편

① 방 문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1층) 산업은행 앞 위치

② 전자우편 : [dbtp7@seoul.go.kr](mailto:dbtp7@seoul.go.kr) 여의도공원 운영팀(☎ 02-761-4078)

③ 제출서류 : 장소사용신청서 및 별도 행사계획서(작성요령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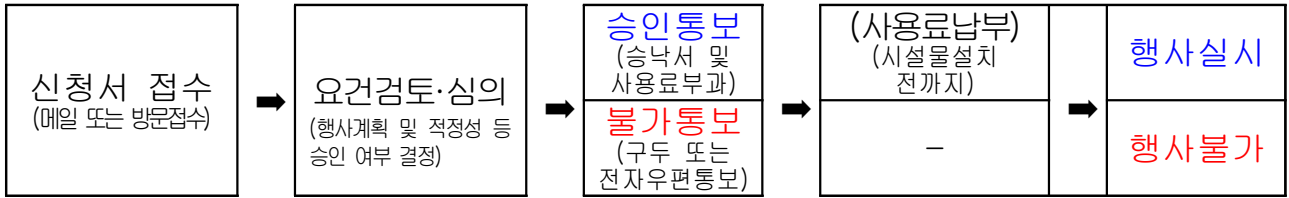
### 【행사계획서 포함내용】

행사일시(기간) · 행사목적 · 행사장소(행사장 배치도, 코스) · 주최 · 주관 · 후원  
참여인원 · 모집 방법 · 교통 · 주차 · 청소 · 안전대책 등

- 신청 양식 : '여의도공원 홈페이지자·공원소식·새소식' 장소사용 접수 공고에서 다운

(<https://parks.seoul.go.kr/template/sub/yeouido.do>)

### 3. 접수 후 심의 절차



#### ① 1차 요건 심사 (심의대상 여부 심사)

· 심의 제외대상과 심의 대상 분류

※ 심의대상으로 서류 보완 대상은 지정일까지 미보완 시 심의 제외

#### ② 2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상정

· 심의위원회 구성 : 내·외부 7인 내외

→ 행사주최자의 행사계획 발표(PPT로 진행)후 심의위원과 질의응답

※ 주최자가 아닌 자는 배석만 가능(1명으로 제한)

· 심의 결과 통보 : 개별 통보(제출된 전자우편으로 회신)

· 심의 내용 기준(행사계획서 작성 요건 충족 여부)

- ① 장소 사용 승인 공간 내 팬스 설치를 통한 배타적 공간 확보 검토
- ② 공원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 ③ 과년도 행사에서 승인조건 위반 및 민원 등의 발생 여부
- ④ 이동판매상, 청소 등 공원 기능 유지 대책 포함 여부
- ⑤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 여부
- ⑥ 교통통제 등 유관기관 심의 결과 및 대책에 대한 유관기관 승인 여부
- ⑦ 시설물(무대, 아치 등)의 설치 위치 및 규모 등의 적정성 여부
- ⑧ 행사 사후 관리(원상복구)계획(시설물 철거 및 청소 대책 등)
- ⑨ 기타 심의위원회 질의답변 요청 사항

### 3. 일시적 장소 사용 승인 기준

#### 가. 일시적 장소 사용 우선순위

- ① 공원관리청(서울특별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예산편성과목 : 행사운영비,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예산편성과목 : 행사운영비,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 ③ 공원관리청(서울특별시)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행사
  - 예산편성과목 :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 ④ 기타 공원 관리 부서에서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행사

#### 나. 일시적 장소 사용 신청을 받지 않는(심의 대상이 아닌) 행사

##### ① 문화행사, 공연, 콘서트 등 개인(단체)의 영리 목적의 행사

- 공연(영화, 콘서트, 연극, 뮤지컬 등)등 비영리 요건(저작권법)
  - 한국저작권 위원회 법령 해석
  -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2)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것
  - 3) 공연이나 방송의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것
  - ※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 금지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구체적 요건)

(<https://mob.tbsi.hometax.go.kr>)

- ①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 ③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 ④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 ⑤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 ⑥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 ②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사

【생활소음 기준(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3항 별표8)】

- 아침(05:00~07:00), 저녁(18:00~22:00): 60dB 이하
- 주간(07:00 ~ 18:00): 65dB 이하

## ③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된 확성기 소음 기준을 따르는 시위성 행사

【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찰청에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된 행사】

- 질서유지인, 질서유지선 등 경찰서 현장 관리(확성기 소음) 통제 해산

※ 집시법 상 시위의 정의 :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2])】

- 등가소음도 : 주간(07:00 ~ 해지기 전): 75dB 이하  
야간(해진 후 ~24:00), 심야(24:00~07:00): 65dB 이하
- 최고소음도 : 주간, 야간, 심야 95dB이하

※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찰청에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된 행사는 서울광장조례에 의거 서울광장에서 심의 (주관부서 서울시 총무과)

## ④ 특정단체 및 개인의 목적을 위한 행사(정당행사, 종교집회, 특정 목적 및 개인의 홍보·캠페인 행사 등)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서 금지하는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행사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5항  
가.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른 금지 광고물 등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 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

## 4. 일시적 장소 사용 신청 정보 안내

### 가. 행사계획서 작성 시 참고 사항

- ① 1회용품 사용의 제한 (1회용 플라스틱 아웃 공원 추진계획)
- ② 공원 통제 시간(21:00) 이후 시설물 설치 및 야간 행사 금지
- ③ 상품 판매행위, 음식물의 조리(뷔페) 및 취사 등의 행사 금지
- ④ 이동상인, 청소 등 공원 이용객 불편 해소 및 공원 기능 유지 대책
- ⑤ 방역 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http://ncov.mohw.go.kr/>)> 참조  
· 50인 이상 행사는 마스크 착용

<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1판) 일부 개정 안내 > 중앙사고수습본부-17135, (2022. 5. 13.)

<1>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 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 참조

- ⑥ 행사 중 폭염, 태풍 등 재난 사항 발생 시 조치 요령  
(<https://www.seoul.go.kr/story/safeseoul/pc.html?ver202206>)
- ⑦ 시설물 설치 행사 관련 행정안전부 2021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  
(<https://www.mois.go.kr/srch.jsp>)
- ⑧ 무대 등 시설물 설치 시, 준수사항

< 여의도 공원 내 설치 조건 >

- 전기시설 사용할 수 없음. 발전차 사용
- 몽골 텐트 설치 시, 모래주머니를 활용하여 고정 조치  
( 못(땃) 사용 및 아스팔트 등 공원 시설 훼손물 설치 금지)

- ⑨ 장소 사용 공간 내 펜스 설치를 통한 배타적 공간 확보에 관한 내용

## 나. 일시적 장소사용료 구성 (이용료+ 점용료+입장료+부가가치세)

### ① 공원시설 이용료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8조 관련 별표 3에 따라 부과
- 공원시설을 행사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 이용료 부과에 있어 도시공원 조례 및 다른 법률에 이용료 기준이 없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 ① -1 공원시설 이용료 산정기준

- 시설물 설치시간부터 시설물 철수 시간(청소 완료시)까지 이용료 산정
- 시설물 설치부터 철수 시간은 기타 행사 금액 적용
- 마라톤 등 체육 경기 행사는 운영시간에 대하여 체육 경기 시간 적용
- 전일 시설물 설치 후 이용하지 않는 존치시간(야간시간)은 체육경기 금액 적용

### ② 공원시설 점용료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 관련 별표에 따라 부과
- 해당 재산 가액(개별공시지가) × (60/1,000)/365일
- ※ 개별공시지가 조회 일사편리(<http://kras.seoul.go.kr/>)

### ③ 공원시설 입장료 부과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5조 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 행사에 대하여 발매총액의 10% 부과

### ④ 부가가치세 부과

- 공연장 외의 시설에서의 행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의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님.

### ⑤ 사전 납부된 시설 이용료 및 입장권 발매 이용료의 환불 규정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 < 전액 환불 >

-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
-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경우

## 5. 행정 사항

### 가. 행사 운영 및 결과 평가제 시행

- ① 행사 종료 후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행사 운영, 시설물 설치 및 철거, 청소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평가 향후 심의 시, 제외 검토  
- 과태료 부과 등 유관 기관 통보 조치

법령 위반 여부 확인 항목	공원 관계자	확인 방법	조치 방법
시설물 설치	안전성 위해 요인		유관부서에 통보
이용객 이동통로 확보 등	이용객 불편 위험요인		
안전요원, 구급차 배치	규정 준수 및 적정성		
법규 위반 현수막 설치(홍보물)	사진 촬영		
행사, 공연 등의 소음	소음 초과 시	소음측정치 제출	점용료 부과
공원 내 무단 차량 출입 및 주차	사진 촬영	이동 및 견인요청	
시설물 훼손 원상복구	사진 촬영		과태료 부과
참가자 흡연 등 기초질서 위반	민원 유발 여부		
청소구역, 이동식 화장실 등	청소 실태, 사진 촬영		
이동판매 상인 및 모금행위 출입	사진 촬영		
조리(뷔페), 취사, 화기사용 금지	사진 촬영		
○ 기타, 특이사항 -			

- ② 공원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있을 시  
다음 연도 전체 행사 심의 제외  
- 주최, 주관, 행사대행업체 모두 포함 (해당 기관 공문으로 통보)

### 나. 행사 승인 후 준비 서류

- ① 공기 중 부양기구·기계(애드벌룬, 비행선, 드론, 풍선 등)을 이용 시  
수도방위사령부 신고 후 승인서 제출  
· 수도방위사령부(<https://drone.onestop.go.kr/>)
- ② 500인 이상 행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  
(<https://www.ydp.go.kr/www/selectTnCfdnFormatListU.do?sc1=3180246&key=2688&cpn=3>)  
※ 500인 미만 행사도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서 양식 활용



③ 청소용역계약서(1,000명 이상 행사는 이동식 화장실 설치 계약서 포함)

- 공원 화장실 이용 시, 발생한 쓰레기 전량 수거 및 청소

④ 무대 등 시설물 설치를 위한 차량 출입 승인신청서

연번	차종	차량번호	출입일시	출입 사유
1			00.00. 00:00~00:00	무대, 음향, 조명 등
2			00.00. 00:00~00:00	물품 하차

⑤ 참가비(입장료)를 받는 마라톤 행사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5조 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입장료(참가비) 발매총액의 10%

< 마라톤 행사 참가비(입장료) 발매 관련 증빙서류 >

- 참가인원 및 참가비 총액(접수 마감일 기준), 참가비 금액 증빙자료(참가비 입금통장 사본, 카드 승인내역 등), 정산서류
- 제출일 : 행사일 하루 전까지 공문으로 제출

⑥ 일시적 장소 사용 공원시설 현황도

- 가-6 : 문화의 마당
- 사 : 야외 무대



## 다. 행사 승인 시 검토기준 안내

### ① 공익성 및 영리성 검토

비영리 및 공익성	검토 내용
공원관리청, 정부, 지자체 추진 공익 행사	행사 기관 방침(예산과목 : 행사운영비, 보조금)
비영리단체 추진 공익	행사 기관 방침(예산과목 : 보조금)
비영리단체(재단법인, 사단법인)	행사계획서 상 주체자에게 이익금 귀속 여부
공연(저작권법), 입장권 발매 행사	공연 실연자에게 통상의 <u>보수 지급 여부</u>
	관객이나 제3자에게 행사 관련 <u>이익 발생 여부</u>

### ② 행사 관련 유관기관 승인, 협의 서류 제출 확인

확인 서류	내용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 승인 공문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승인
수도방위사령부 승인 공문	공기 중 부양기구·기계류 행사
방역 계획	50인 이상 행사 마스크 착용
마라톤 행사 유관 기관 협의 내역	청소,도로,120, 교통, 주차, 소방서 등 70여개 부서 (서울시, 구청, 경찰청)
용역계약서 등	청소(이동식화장실 포함) 등

### ③ 행사계획서 공원 이용 승인조건 준수

기타 내역	승인 조건
현수막 게시	현수막 게시대 부착만 허용
화장실 사용	1,000인 미만 행사 공원 화장실 사용 시, 전담 청소원 배치
	1,000인 이상 행사 이동실 화장실 설치
소음 기준 확보	100W 미만 앰프, 소음측정기 활용 측정 데이터 제출
공원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 이행각서 제출
마라톤 행사	서울시 후원 권고, 행사 후 최소 70건 이상 민원 답변
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관객외 시설물 설치시 보상 포함 할 것)
	-참가인원을 명시된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CSL) <1사고당 1인당 1억>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 1인당 보상한도액 1,000,000원
특수효과 사용금지	불꽃, 꽃가루 등

## 라. 행사 운영 시 참고사항

#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10조(과태료)

관련 법령	해 당 조 항	과태료 금액
도시공원및녹지 등에 관한법 제49조 제1항	1.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리죽게 하는 행위	100,000원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50,000원
	3.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0,000원
도시공원및녹지 등에 관한법 제49조 제2항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0,000원
	2.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적용 시, 200,000원)	50,000원
도시공원및녹지 등에 관한법 시행령 제50조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100,000원
	2.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0,000원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원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50,000원
	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	50,000원
	6. 전 · 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00,000원
	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0,000원
	8.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 하는 행위	100,000원
금연구역에서 흡연 관련법규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 제6항 및 시행령 제33조 제1항, 관련 조례 제5조, 제10조	100,000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공원내 흡연시)	